

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265,394,390 | 37,961,832 |
| 일반회계 | 1,119,355,268 | 33,580,658 |
| 특별회계 | 146,039,122 | 4,381,174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39,492,067 | 4,184,762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29,300,808 | 879,024 |
| 하수도사업특별회계 | 110,191,259 | 3,305,738 |
| 기타특별회계 | 6,547,055 | 196,412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2,514,567 | 75,437 |
|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| 43,717 | 1,312 |
|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| 1,305,000 | 39,150 |
| 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 | 186,673 | 5,600 |
|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| 2,153,321 | 64,600 |
| 지하수특별회계 | 343,777 | 10,313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6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